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12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2월 9일

산업통상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산업통상부장관이”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를 “산업통상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를 “별표1의2의”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산업통상부장관의”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에”를 “산업통상부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4항의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제3항, 제5항의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은”으로 한다.

같은 조 6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부장관은”으로 하며,
“지원한도는 국비(교부결정액 기준) 1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국
비 지원한도는 제14조제4항제2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별표3에 따른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
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이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
으로 이전하는 경우 (단, 대기업의 경우 균형발전하위지역 및 산업위
기대응지역에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내
에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
종의 공장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3. 중소·중견기업이 균형발전하위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4. 중소·중견기업이 산업위기대응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별표4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이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내에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공장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3.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은 1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를 “총액(교부결정액 기준)과”로,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은 200억원을”을 “총액(교부결정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제8항 및 제9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은”으로 한다.

1.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국비 한도

가. 균형발전하위지역 : 300억 원

나. 산업위기대응지역 : 300억 원

다. 그 외의 지역 : 150억 원

2.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한도

가. 균형발전하위지역 : 300억 원

나. 산업위기대응지역 : 300억 원

다. 그 외의 지역 : 200억 원

제15조제1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은 “산업통상부장관은”으로, “3퍼센트, 중견기업은 5퍼센트, 중소기업은 10퍼센트”는 “3퍼센트포인트, 중견기업은 5퍼센트포인트, 중소기업은 10퍼센트포인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부장관은”으로, “제11호”를 “제12호”로, “2퍼센트, 제12호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 5퍼센트, 설비 및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중견기업 8퍼센트, 중소기업 10퍼센트”를 “2퍼센트포인트”로, “있고”를 “있고, 제13호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설비 및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 5퍼센트포인트, 중견기업 8퍼센트포인트, 중소기업 10퍼센트포인트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3퍼센트, 중견기업은 5퍼센트, 중소기업은 10퍼센트”를 “3퍼센트포인트, 중견기업은 5퍼센트포인트, 중소기업은 10퍼센트포인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제11호까지의”를 “제12호까지의”로, “20퍼센트로”를 “20퍼센트
포인트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3항제12호의”를 “제3항제13호의”
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부장관
은”으로, “10퍼센트”를 “10퍼센트포인트”로 한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분야 국
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
제16조에 제2항의 “최초계약체결일로”를 “최초 계약체결일 또는 건축신
고일(허가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투자협약 체결일 이전에
매입한 폐건물이라 하더라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매입대상이 가동이 중단된(폐쇄된) 폐건물로서 리모델링 등을 통한
생산시설로의 전환 목적인 경우
2. 투자협약 체결일이 폐건물 매입의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
내인 경우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항 제6호, 제7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3
호 중 “처분일로부터 1년 경과 후”를 “처분일 이후”로 하며 같은 조 제10
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부
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산업통
상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산

업통상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을 “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다음 각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제1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완료일 3개월 이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승인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12. 자연재해, 국제분쟁, 특정 산업군의 전세계적인 수요감소 등 예측 불가능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기타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3년 6개월 이내에 투자의 완료가 불가능하여 투자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투자기간을 연장하여도 제17조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

하는 경우

나. 투자기간 연장 이후 총 투자기간이 착공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인 경우

다. 이 호에 따른 투자기간 연장을 승인받은적이 없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산업통상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산업통상부장관이”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산업통상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항 및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3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및 “산업통상부장관의”로, 같은 조 제4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국비 총합은 200억 원(교부결정액 기준)을”을 “국비 총액은 제14조제4항제2호의 금액을”로 하

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1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부장관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산업통상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u>산업통상자원부 장관</u>)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따라 국가(<u>산업통상부 장관</u>)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u>산업 통상자원부장관</u>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p>	<p>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u>산업 통상부장관</u>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p>

현행	개정안
<p>자치단체의 장이 <u>산업통상자원부 장관</u>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방 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 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p> <p>3. (생략)</p> <p>4. “보조금신청일”이란 제17조 제3항의 보조금 신청 공문이 <u>산업통상자원부</u>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p> <p>5. ~ 9. (생략)</p>	<p>지방자치단체의 장이 <u>산업통상부 장관</u>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방 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 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4. “보조금신청일”이란 제17조 제3항의 보조금 신청 공문이 <u>산업통상부</u>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p> <p>5. ~ 9. (현행과 같음)</p>
<p>제4조(업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1. ~ 2. (생략)</p> <p>3. “지역특성화업종”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해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p> <p>4. “지식서비스산업”은 「<u>산업발전법 시행령</u>」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p> <p>5.~10. (생략)</p>	<p>제4조(업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지역특성화업종”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해 <u>산업통상부장관</u>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p> <p>4. “지식서비스산업”은 <u>별표1</u>의 2의 산업을 말한다.</p> <p>5.~10.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1.~5. (생략)</p> <p>6.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u>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p> <p>7.~10. (생략)</p>	<p>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1.~5. (현행과 같음)</p> <p>6.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u>산업통상부장관의</u>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p> <p>7.~10. (현행과 같음)</p>
<p>제8조(지원대상) ① ~ ④ (생략)</p> <p>⑤ 폐쇄된 건물(이하 “폐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이</p>	<p>제8조(지원대상) ① ~ ④ (생략)</p> <p>⑤ 폐쇄된 건물(이하 “폐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이</p>

현행	개정안
<p>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제18조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 때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업이 신속한 투자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신청 시 <u>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완료 후에 투자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u></p>	<p>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제18조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 때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업이 신속한 투자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신청 시 <u>산업통상부에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완료 후에 투자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u></p>
<p>제13조(지원내용)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별표3에 따른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와 별표4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설비보조금을 지방자</u></p>	<p>제13조(지원내용) ① <u>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별표3에 따른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u>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② 삭제</u></p>	<p><u>1. 기업이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단, 대기업의 경우 균형발전하위지역 및 산업위기대응지역에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u></p> <p><u>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내에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공장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u></p> <p><u>3. 중소·중견기업이 균형발전하위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u></p> <p><u>4. 중소·중견기업이 산업위기대응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u></p> <p><u>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u></p>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내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p>	<p>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별표4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1. 기업이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p> <p>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내에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공장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p> <p>3.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p> <p>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 내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p>

현행	개정안
<p>호의 주차장, 제6호의2,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별표4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비용의 <u>10퍼센트</u>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p> <p>⑤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p> <p>⑥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투자사업장 주업종이 제15조제11항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p>	<p>주차장, 제6호의2,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별표4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비용의 <u>20퍼센트</u>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p> <p>⑤ <u>산업통상부장관</u>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p> <p>⑥ <u>산업통상부장관</u>은 투자사업장 주업종이 제15조제11항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p>

현행	개정안
<p>하여 최대 100명 한도로 별표 2에 따라 신규 채용된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이하 “고용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고, 이때 국비 보조비율은 별표 5의 투자사업장 지역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며, <u>지원한도는 국비(교부결정액 기준) 1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u></p>	<p>최대 100명 한도로 별표 2에 따라 신규 채용된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이하 “고용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고, 이때 국비 보조비율은 별표 5의 투자사업장 지역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며, <u>국비 지원한도는 제14조제4항제2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14조(지원범위)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별표5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은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지원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국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하나의 보</p>	<p>제14조(지원범위) ① <u>산업통상부장관</u>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별표5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은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지원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하나의 보</p>

현 행	개 정 안
<p>조사업에 지원하는 국비 <u>총합</u> (교부결정액 기준)은 150억 원 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기 업에 지원하는 국비 <u>총합</u>(교부 결정액 기준)은 200억 원을 초과 할 수 없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⑤ (생 략)</p> <p>⑥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입지 보조금 및 설비보조금 산정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현금지원 규모, 남북협력기금에 서 지원되는 보험금 규모 등을</p>	<p>조사업에 지원하는 국비 <u>총액</u> (교부결정액 기준)과 하나의 기 업에 지원하는 국비 <u>총액</u>(교부 결정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u>금액을</u> 초과할 수 없다.</p> <p>1.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국비 <u>한도</u> 가. 균형발전하위지역 : 300억 원 나. 산업위기대응지역 : 300억 원 다. 그 외의 지역 : 150억 원</p> <p>2.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u>한도</u> 가. 균형발전하위지역 : 300억 원 나. 산업위기대응지역 : 300억 원 다. 그 외의 지역 : 200억 원</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u>산업통상부장관</u>은 입지보조 금 및 설비보조금 산정 시 「외 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현금 지원 규모,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되는 보험금 규모 등을 감</p>

현행	개정안
<p>감안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p> <p>⑦ (생략)</p> <p>⑧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보조금 집행실적, 지역의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p> <p>⑨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투자기업의 선행투자 및 사업이행 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p>	<p>안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u>산업통상부장관</u>은 보조금 집행실적, 지역의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p> <p>⑨ <u>산업통상부장관</u>은 투자기업의 선행투자 및 사업이행 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p>
제15조(지원특례)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별표6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지	제15조(지원특례) ① <u>산업통상부장관</u> 은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별표6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p>원할 수 있다.</p> <p>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u>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은 <u>3퍼센트</u>, 중견기업은 <u>5퍼센트</u>, 중소기업은 <u>10퍼센트</u>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은 정산 시, 매년 사업이행 점검 시, 사업이행기간 종료 시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u> 다음 제1호에서 <u>제11호</u>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u>2퍼센트</u>, 제12호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 5퍼센트, 설비 및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중견기업 8퍼센트, 중소기업 10</p>	<p>② <u>산업통상부장관은</u>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은 <u>3퍼센트포인트</u>, 중견기업은 <u>5퍼센트포인트</u>, 중소기업은 <u>10퍼센트포인트</u>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은 정산 시, 매년 사업이행 점검 시, 사업이행기간 종료 시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u>산업통상부장관은</u> 다음 제1호에서 <u>제12호</u>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u>2퍼센트포인트</u>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고, 제13호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설비 및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 5퍼센</p>

현행	개정안
<p><u>퍼센트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u> <u>있고, 각 호는 중복하여 가산할</u> <u>수 없다.</u></p> <p>1.~11. (생략) 12. <u>(신설)</u></p> <p>12.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 회발전특구에 투자하여 입주하 는 기업 ④ (생략) ⑤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u> <u>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u>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u>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상시고</u> <u>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에</u> <u>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 1.~ 2. (생략) ⑥ (생략)</p>	<p><u>트포인트, 중견기업 8퍼센트포</u> <u>인트, 중소기업 10퍼센트포인트</u> <u>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u> 각 호는 중복하여 가산할 수 없 다.</p> <p>1.~11. (현행과 같음) 12. 「<u>조세특례제한법</u>」 제10조제 <u>1항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u> <u>분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u> <u>사업에 투자하는 기업</u></p> <p>13.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 회발전특구에 투자하여 입주 하는 기업 ④ (현행과 같음) ⑤ <u>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제1</u> <u>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u> <u>우에는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u> <u>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보조</u> <u>금을 지원할 수 있다.</u> 1.~ 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⑦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⑧ <u>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u>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은 <u>3퍼센트</u>, 중견기업은 <u>5퍼센트</u>, 중소기업은 <u>10퍼센트</u>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⑨ 제1항과 제8항의 지원 비율은 합산하여 가산할 수 없고, 제2항과 제3항제1호부터 <u>제11호</u>까지의 지원 비율은 합산하여 가산할 수 없으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은 최대 <u>20퍼센트</u>로 한다. 다만, <u>제3항제12호</u>의 경우</p>	<p>⑦ <u>산업통상부장관</u>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⑧ <u>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u>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은 <u>3퍼센트포인트</u>, 중견기업은 <u>5퍼센트포인트</u>, 중소기업은 <u>10퍼센트포인트</u>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⑨ 제1항과 제8항의 지원 비율은 합산하여 가산할 수 없고, 제2항과 제3항제1호부터 <u>제12호</u>까지의 지원 비율은 합산하여 가산할 수 없으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은 최대 <u>20퍼센트포인트</u>로 한다. 다만, <u>제3항제13호</u>의</p>

현행	개정안
<p>에는 예외로 한다.</p> <p>⑩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u>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실적, 정산 및 사업이행관리 적정 여부 등 보조사업 관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 국비 보조비율을 <u>10퍼센트</u> 이내에서 가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⑪ (생략)</p>	<p>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⑩ <u>산업통상부장관은</u>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실적, 정산 및 사업이행관리 적정 여부 등 보조사업 관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 국비 보조비율을 <u>10퍼센트 포인트</u> 이내에서 가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⑪ (현행과 같음)</p>
<p>제16조(기업 유치)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u>최초 계약체결일</u>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고, 사업재</p>	<p>제16조(기업 유치) ① (현행과 같음)</p> <p>제16조(기업 유치) ② 제1항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u>최초 계약체결일 또는</u></p>

현행	개정안
<p>편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한다. (본 단서조항은 착공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하며, 제17 조의 ‘착공신고일’, 제20조제1항 에 따른 ‘착공신고’, 제20조제3 항에 따른 ‘착공신고일’도 동일 한 기준으로 적용)</p> <p>③ ~ ④ (생략) <u><신 설></u></p>	<p><u>건축신고일(허가일)</u>로 착공신 고일을 대체하고, 사업재편기 업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일 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한다.(본 단서조항은 착공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하며, 제17 조의 ‘착공신고일’, 제20조제1 항에 따른 ‘착공신고’, 제20조 제3항에 따른 ‘착공신고일’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p> <p>③ ~ ④ (현행과 같음) <u>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투자협약 체결 일 이전에 매입한 폐건물이라 하더라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u></p> <p>1. <u>매입대상이 가동이 중단된 (폐쇄된) 폐건물로서 리모델 링 등을 통한 생산시설로의 전환 목적인 경우</u></p> <p>2. 투자협약 체결일이 폐건물</p>

현행	개정안
	<p><u>매입의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u></p>
<p>제17조(보조금의 신청) ① ~ ②</p> <p>(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실적평가점수가 25점 이상이어야 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p> <p>1. ~ 5. (생략)</p> <p>6. 그 밖에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요청하는 서류</p> <p>④ ~ ⑥ (생략)</p> <p>⑦ 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요청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지방자치</p>	<p>제17조(보조금의 신청) ① ~ ②</p> <p>(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실적평가점수가 25점 이상이어야 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u>산업통상부장관</u>에게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그 밖에 <u>산업통상부장관</u>이 요청하는 서류</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⑦ 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요청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지방자치</p>

현행	개정안
<p>단체의 장은 기업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p> <p>1. ~ 4. (생략)</p> <p>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가 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 또는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으로 일부의 환수 처분 또는 일부 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 (자연재해, 대외경제환경 및 정부정책의 급격한</p>	<p>단체의 장은 기업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u>산업통상부장관</u>에게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가 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 또는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으로 일부의 환수 처분 또는 일부 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 (자연재해, 대외경제환경 및 정부정책의 급격한</p>

현행	개정안
<p>변화, 기타 심의위원회 인정) 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u>처분일로부터 1년 경과 후</u> 신청가능) 4. ~ 6. (생략) ⑨ (생략) ⑩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정부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정부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제7항의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등 보조금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보조금 신청 및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변화, 기타 심의위원회 인정) 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u>처분일 이후</u> 신청가능) 4. ~ 6.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⑩ <u>산업통상부장관</u>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정부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정부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제7항의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등 보조금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보조금 신청 및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p>	<p>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u>산업통상부장관</u>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p>

현행	개정안
<p>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기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②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u>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p> <p>③ ~ ④ (생략)</p> <p>⑤ <u>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u>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u> 요구에 응해야 한다.</p> <p>⑥ <u>산업통상부장관</u>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p>	<p>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기타 <u>산업통상부장관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②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u>산업통상부장관에게</u>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u>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u>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u> 요구에 응해야 한다.</p> <p>⑥ <u>산업통상부장관</u>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p>

현행	개정안
<p>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 내용의 적정성, 투자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p> <p>⑦ (생략)</p> <p>⑧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으로부터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업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⑩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 결정이</p>	<p>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 내용의 적정성, 투자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u>산업통상부장관</u>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산업통상부장관</u>으로부터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업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⑩ <u>산업통상부장관</u>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p>

현행	개정안
<p>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⑪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⑫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p> <p>⑬ (생략)</p>	<p>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⑪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산업통상부장관</u>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⑫ <u>산업통상부장관</u>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p> <p>⑬ (현행과 같음)</p>
제19조(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제19조(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p>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u>산</u></p>	<p>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u>산</u></p>

현행	개정안
<p><u>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p> <p>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 잔액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과 상계할 수 있다.</p> <p>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보조금 교부 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⑤ ~ ⑨ (생략)</p> <p>⑩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제9항의 지급액에 근거</p>	<p><u>업통상부장관</u>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p> <p>② <u>산업통상부장관</u>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 잔액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과 상계할 수 있다.</p> <p>③ <u>산업통상부장관</u>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u>산업통상부장관</u>이 보조금 교부 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⑤ ~ ⑨ (현행과 같음)</p> <p>⑩ <u>산업통상부장관</u>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제9항의 지급액에 근거하여</p>

현행	개정안
<p>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지급과 정산 이후 지급비율을 예산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⑪ (생략)</p>	<p>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지급과 정산 이후 지급비율을 예산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⑪ (현행과 같음)</p>
<p>제20조(투자의 수행) ① (생략) ②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 ~ 11. (생략) <u><신설></u></p>	<p>제20조(투자의 수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u>산업통상부장관</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완료일 3개월 이전까지 <u>산업통상부장관</u>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u>산업통상부장관</u>은 해당 사항을 승인할 때에는 <u>심의위원회의 심의</u>를 거쳐야 한다.</p> <p>1. ~ 11. (현행과 같음) 12. <u>자연재해, 국제분쟁, 특정산업군의 전세계적인 수요감소 등 예측 불가능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기타 심의</u></p>

현행	개정안
<p>③ ~ ④ (생략)</p> <p>⑤ <u>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청을 승인한 경우 투자기간에서 투자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해당 기간(지방자치</u></p>	<p><u>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3년 6개월 이내에 투자의 완료가 불가능하여 투자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u></p> <p><u>가. 투자기간을 연장하여도 제17조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u></p> <p><u>나. 투자기간 연장 이후 총 투자기간이 착공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u></p> <p><u>다. 이 호에 따른 투자기간 연장을 승인받은적이 없는 경우</u></p> <p>③ ~ ④ (생략)</p> <p>⑤ <u>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청을 승인한 경우 투자기간에서 투자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해당 기간(지방자치단체의</u></p>

현행	개정안
<p>단체의 장이 제2항의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의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p> <p>⑥ 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해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제정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계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현황을 보조금 정산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생략)</p>	<p>장이 제2항의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u>산업통상부장관</u>이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의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p> <p>⑥ 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해 <u>산업통상부장관</u>이 제정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계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현황을 보조금 정산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현행과 같음)</p>
제20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20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p>①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p>	<p>①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p>

현행	개정안
<p>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u>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u>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p> <p>② ~ ③ (생략)</p> <p>④ 투자기업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u>산업통상부장관의</u> 확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u>산업통상부장관이</u>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u>산업통상부장관의</u>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투자기업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u>산업통상부장관의</u> 확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보조금의 정산) ① (생략)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u>산업통상부장관</u> 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확정된 정산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에게 보고하고, 투자기업에 정산완료를 통지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잔액 및 이자(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이하 같다)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u>산업통상부장관</u> 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확정된 정산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u>산업통상부장관</u> 에게 보고하고, 투자기업에 정산완료를 통지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잔액 및 이자(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이하 같다)를 <u>산업통상부장관</u>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p>⑦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기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⑧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7항의 의뢰받은 사무에 대해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p> <p>⑨ (생략)</p>	<p>⑦ <u>산업통상부장관</u>은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기타 <u>산업통상부장관</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⑧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7항의 의뢰받은 사무에 대해 <u>산업통상부장관</u>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p> <p>⑨ (현행과 같음)</p>
<p>제22조(사업이행) ① (생략)</p> <p>②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 ~ 10. (생략)</p> <p>③ (생략)</p> <p>④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의 사업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p>	<p>제22조(사업이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u>산업통상부장관</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 ~ 10.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u>산업통상부장관</u>의 사업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p>

현행	개정안
<p>요구에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도 협조해야 한다.</p> <p>⑤ (생략)</p> <p>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과 <u>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u>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p> <p>⑦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p>	<p>구에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도 협조해야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u>산업통상부장관</u>과 <u>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u>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p> <p>⑦ <u>산업통상부장관</u>은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p>
제23조(보조사업의 종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완료보	제23조(보조사업의 종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완료보

현행	개정안
<p>고서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지대상 기존사업장의 고용이 유지되고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사업이행기간 모든 해에 고용계획인원을 초과한 투자기업에 대해 별표1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설비보조금(이하 “추가고용인센티브”라 한다)을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된 상시고용인원 증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가고용인센티브 신청기한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의 보조사업 종결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p>	<p>고서를 <u>산업통상부장관</u>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지대상 기존사업장의 고용이 유지되고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사업이행기간 모든 해에 고용계획인원을 초과한 투자기업에 대해 별표1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설비보조금(이하 “추가고용인센티브”라 한다)을 <u>산업통상부장관</u>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된 상시고용인원 증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가고용인센티브 신청기한은 <u>산업통상부장관</u>의 보조사업 종결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④ 추가고용인센티브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국비 보조비율을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100으로 할 수 있으며,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합은 <u>200억 원(교부결정액 기준)</u>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의 승인을 받아야 보조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p> <p>⑥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보조사업의 종결 검토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조사업 종결 검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p>	<p>④ 추가고용인센티브는 <u>산업통상부장관</u>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국비 보조비율을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100으로 할 수 있으며,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u>총액은 제14조제4항제2호의 금액</u>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u>산업통상부장관</u>의 승인을 받아야 보조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p> <p>⑥ <u>산업통상부장관</u>은 보조사업의 종결 검토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조사업 종결 검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p>
제29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u>산업</u>	제29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u>산업</u>

현행	개정안
<p><u>통상자원부장관</u>은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 (생략)</p>	<p><u>통상부장관</u>은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0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생략)</p> <p>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p> <p>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p> <p>3. (생략)</p> <p>4. <u>산업통상자원부</u> 지역경제진흥과장</p> <p>5. (생략)</p>	<p>제30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u>산업통상부장관</u>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p> <p>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u>산업통상부장관</u>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p> <p>3. (현행과 같음)</p> <p>4. <u>산업통상부</u> 지역경제진흥과장</p> <p>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6. <u>산업통상자원부</u> 남북경협팀장 (제1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p> <p>7. <u>산업통상자원부</u> 기업정책팀장(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p> <p>8. <u>산업통상자원부</u> 산업공급망정책과장(제5조제6호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p> <p>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8명 이내로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4. 그 밖에 보조금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p>	<p>6. <u>산업통상부</u> 남북경협팀장 (제1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p> <p>7. <u>산업통상부</u> 기업정책팀장(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p> <p>8. <u>산업통상부</u> 산업공급망정책과장(제5조제6호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p> <p>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u>산업통상부장관</u>이 8명 이내로 위촉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그 밖에 보조금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u>산업통상부장관</u>이 인</p>

현행	개정안
<p>인정한 자</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정한 자</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산업통상부장관</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31조(회의) ① ~ ④ (생략)</p> <p>⑤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산업통상자원부</u> 지역경제진흥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p>	<p>제31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산업통상부</u> 지역경제진흥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p>
<p>제31조의2(소위원회) ① ~ ② (생략)</p> <p>③ 소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산업통상자원부</u> 지역경제진흥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p> <p>④ ~ ⑤ (생략)</p>	<p>제31조의2(소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소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산업통상부</u> 지역경제진흥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33조(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u>산업</u></p>	<p>제33조(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 ① <u>산업통상부장관</u>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u>산업통상부</u></p>

현행	개정안
<p><u>통상자원부장관</u>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이행·관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이행·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투자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이자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p>	<p><u>장관</u>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이행·관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이행·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u>산업통상부장관</u>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투자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u>산업통상부장관</u>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이자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34조(보조금의 환수) ① (생략)</p> <p>1. ~ 12. (생략)</p> <p>13. 기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p> <p>② ~ ③ (생략)</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및 반납 계획 등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검토를 거쳐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u> 제출하여야 하며,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해당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34조(보조금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기타 <u>산업통상부장관</u>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및 반납 계획 등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검토를 거쳐 <u>산업통상부장관에게</u> 제출하여야 하며, <u>산업통상부장관</u>은 해당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35조(별도지침)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p>	<p>제35조(별도지침) ① <u>산업통상부장관</u>은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경비의 보조)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에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략) 7. 기타 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의뢰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36조(경비의 보조) <u>산업통상부장관</u> 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u>산업통상부장관</u> 이 의뢰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37조(자료제출 및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1. ~ 9. (생략)	제37조(자료제출 및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u>산업통상부장관</u>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1. ~ 9. (현행과 같음)
제38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송진행 상황 일체를 <u>산업통상자원</u>	제38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송진행 상황 일체를 <u>산업통상부장</u>

현행	개정안
<u>부장관</u> 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u>관</u> 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u>산업통상부장관</u> 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